

2015년 아동·청소년 정신의료기관 진료비 지원안내

♥ 지원기간

- 2015.1.1. ~ 2015. 12.10.

♥ 지원대상

- 주민등록상 복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

※저소득층이란?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소년소녀가장, 한부모 가정 등

♥ 지원내용

- 정신의료기관 치료비용(진단검사비, 약제비, 입원비 포함)

- 정신의료기관 또는 상담기관 치료 개입 프로그램 참여비용 등

♥ 지원금액

- 1인당 40만원 이내

♥ 구비서류

-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사본

- 차상위 계층 일 경우 차상위계층 증명서

- 진료비 영수증(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기관)

♥ 신청방법

센터로 전화 문의 및 신청서 작성